

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우형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06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4일

발 의 자: 우형찬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경훈, 김규남, 김성준,
김영철, 김인제, 김형재,
남창진, 민병주, 박강산,
박승진, 박영한, 박칠성,
봉양순, 송도호, 왕정순,
유정인, 유정희, 이병도,
이영실, 이원형, 이종태,
임규호, 임종국, 정준호,
정지웅, 한 신, 홍국표
의원(27명)

1. 제안이유

- 단순히 필수노동자의 업무 현황,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의 파악을 통한 실태조사에 국한하지 않고, 업무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재난(자연재난·사회재난) 등의 피해로 인해 추후 실태조사 이후, 올바른 이행 등이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조항을 마련하여, 노동자의 안전한 업무 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의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, 이에 대한 평가 조항을 규정함 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」,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- 다. 기타: 별도 작성내역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실태조사)”를 “(실태조사 및 평가)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 등이 종료된 경우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실태조사) ① · ② (생 략)	제7조(실태조사 및 평가) ① · ② (현 행과 같음)
<신 설>	③ 시장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법 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른 대 규모 재난 등이 종료된 경우 지원 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 를 하여야 한다.